

■ 결제방법

무신 용장 방식	송금	방식	D/D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M/T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 M/T)		
			T/T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 : T/T)		
		시기	사전송금	CWO = Cash With Order		
			사후송금	COD	현물상환방식(Cash On Delivery)	
				CAD	서류상환방식(Cash Against Document)	
				O/A	청산계정(Open Account)	
	추심	D/P at sight				
		D/P usance				
		D/A				
신용장 방식	① 일람지급신용장, ② 연지급신용장, ③ 인수신용장, ④ 매입신용장					
기타 금융	팩토링	무신용장방식(D/A 또는 사후송금방식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Account Receivable)을 팩터(Factor)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수출자에게는 전도금지급, 대금회수 보증, 수입자에게는 손쉽게 신용구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출금융서비스의 일종이다.				
	포페이팅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의미로 불어에서 유래되었다. 물품 또는 서비스 무역거래에서 환어음, 약속어음과 같은 일련의 신용수단을 포페이팅가 상환청구권 없이, 즉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및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수출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 예외거래	국내외 외환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제외)
사후보고 (1개월 이내)	-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포함) - 국내외 외환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제외)
사전신고 (한국은행총재)	미화 3천만불 초과
결제방법 및 채권회수 등에 대한 관리	- 외국환은행의 '인정'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 지급·연지급·인수·매입신용장의 비교

신용장 종류	수출지 상대은행	어음발행 요구 여부	어음 종류	취급은행 (수권은행)	배서 여부
지급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 미요구 (요구 가능)	일람출급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연지급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 미요구	기한부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인수신용장	예치한 거래은행	어음발행요구	기한부	지정은행	배서 불필요
매입신용장	무예치한 거래은행	어음발행요구 (미요구 가능)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원칙적으로 자유	배서 필요

■ 다양한 신용장

[선대신용장] :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품의 선적 전에 미리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취자가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 최초 개설한 신용장이 일정한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약정한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

-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견질신용장'을 의미 - 이는 원신용장(Master L/C, Original L/C)의 수취자가 원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당해 물품의 공급상을 수취자로 하여 다시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Baby L/C, sub L/C, Second L/C)을 말한다.
- 다른 하나는 연계무역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동시개설 신용장'을 의미

[기탁신용장] : '기탁신용장(Escrow Credit)'이란수입상이 신용장의 개설 시에 신용장의 한 조건으로 당해 신용장의 결제대금을 특정의 은행(개설은행, 매입은행, 제3의 환거래은행 등)에 개설되어 있는 수취자 명의의 에스크로 어카운트(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둔 것(신용장)을 의미한다.

[토마스 신용장] : '토마스 신용장(Tomas Credit)'은 이미 언급한 연계무역하에서의 백투백 신용장과는 달리 신용장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대음신용장의 개설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장차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의 제출을 조건부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기한부신용장의 종류

Shipper's Usance	수출상(Shipper)이 직접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하여 일정 기간 대금결제를 유예하여 주는 방식의 기한부 신용장
Overseas Banker's Usance	해외은행의'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에 의거 수출상에게는 일람불로 즉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는 'Overseas Banker's Usance'는 개설은행의 해외 예치환거래은행(또는 개설은행의 해외 본지점)이 신용을 공여하여 주는 방식
Domestic Banks's Usance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국내의 은행(개설은행 등)이 인수하여 이 를 할인함으로써 수출상에게는 일람불로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는 일정 기간 수입대금의 결제를 유예하여 주는 방식

■ 기한부어음의 만기일 산정방법

일람후 정기출급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날로부터 만기가 가산되는 어음이다. 일수에 의할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부터 계산한다. 월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일, 말일을 만기일, 12월30일
일자후 정기출급	① 'At 2 months after draft's date' : 어음지급인의 인수일과 관계없이 만기일이 확정되며 지정일자의 다음 날이 환어음 만기의 가산일이 된다. ② 환어음의 기한과 관련하여 'From', 이는 'After'와 동일한 의미, 따라서 해당 일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만기를 산정 ③ 'B/L date'란 본선적재일자(On board dat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④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의 경우에만 그 발행일자를 의미
확정일출급	환어음에 지급이 이행될 미래의 일자가 기재된 어음이다.

2과목 신용장통일규칙(UCP600)과 국제무역규칙

■ UCP600 용어정의

-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 통지은행(Advising Bank)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 은행영업일이라 함은 본 규칙에 따라 업무가 이행되어 지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규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를 말한다.
-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 수취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보통 수출자)

-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 확인은행이라 함은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e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 지정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이 사용 가능한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을 말한다.

-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신용장조건, 본 규칙의 적용 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 Honour means
 -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 to accept a bill of exchange("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 결제(honour)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일람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연지급을 확인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수취자가 발행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 Article 6.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 A credit must state the bank with which it is available or whether it is available with any bank. A credit available with a nominated bank is also available with the issuing bank.
-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은 또한 개설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A credit must state whether 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or negotiation.
- 신용장은 그 신용장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도 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 i.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will be deemed to b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 i.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대금의 결제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a.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 ii.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의 장소가 제시를 위한 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에서 의 제시장소는 그 모든 은행의 소재지가 된다.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의 소재지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취자에 의한 또는 수취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Article 10. Amendment 제10조 조건변경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 제38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만약 있다면 확인은행과 수취자의 동의 없이 조건변경(amendment)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경우) 및 수취자 모두의 동의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음
 - 신용장 주요 거래 당사자: 수취자,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 [주의] Applicant는 주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

[조건변경 효력발생 시점]

- 개설은행(issuing bank) : 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하게 구속됨 (irrevocably bound)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여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변경 내용에 취소 불가하게 구속됨(irrevocably bound)

확인은행이 신용장 조건변경에 확인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issuing bank에게 알리고, beneficiary한테 통지할 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함

■ Article 12. Nomination 제12조 지정

- Unless a nominated bank is the confirming bank, an authorization to honour or negotiate does not impose any obligation on that nominated bank to honour or negotiate, except when expressly agreed to by that nominated bank and so communicated to the beneficiary.
-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한, 인수·지급 또는 매입하기 위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취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은행에게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 환어음을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 부담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확약을 선지급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그 지정은행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Receipt or examination and forwarding of documents by a nominated bank that is not a confirming bank does not make that nominated bank liable to honour or negotiate, nor does it constitute honour or negotiation.
-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의 수령 또는 심사 및 발송은 인수·지급 또는 매입할 의무를 그 지정은행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며, 인수·지급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지정은행이 지정에 따라 행위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정은행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므로 위 조항상의 행위는 결제 (honour) 또는 매입(negotiation)을 구성하지 않는다.
-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should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하여 온 은행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모든 통고를 통지하여 야 한다.
-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e amendment.
- 조건변경의 부분승낙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건변경의 거절통고로 본다.

■ Article 14.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서류심사기간- 제시 다음날부터 최장 5 banking days(≠calendar days)]							
- 각 은행은 서류 접수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가산하여 최장 5은행영업일(5 banking days) 동안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 최장 5은행영업일의 서류심사기간은 다른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촉박하거나 결제 만기가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지정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의 최장 서류심사기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월요일에 서류가 제시된 경우							
제시일					심사기간산정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서류제시	1	2	3	4	×	×	5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임박하여 5은행영업일 동안 심사할 경우 신용장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사를 위해 5은행영업일을 사용할 수 있다.							

[21일의 법칙]

- 신용장에서 서류제시기일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는 선적 후 21일 또는 유효기일이 종료되는 기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 내에 서류제시장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25조에 해당하는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
- [Tip]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2015, JULY

제시일					심사기간산정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서류제시	1	2	3	4	×	×	5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임박하여 5은행영업일 동안 심사할 경우 신용장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심사를 위해 5은행영업일을 사용할 수 있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2 선적일 7/3~7/23 : 21일간 7/23까지 서류제시해야 함. - 만일 신용장 유효기일이 7/23이전이면 신용장유효기일 이내로 서류제시해야 함 - 규정(ISBP745 규정)운송서류가 아닌 유사운송서류 (Delivery Orde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 또는 사본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7 선적일 7/8~7/28 : 21일간 7/28 서류제시 가능 - 마지막 날이 non-backing day인 토요일이 장유효기일 이내로 서류제시해야 함 7/30 월요일까지 서류제시 가능							

■ Article 20. Bill of Lading 제20조(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선하증권에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이 없는 경우 본선적재부기 필요 없음
- 선하증권에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이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구분	사전운송수단(pre-carriage) 표시	본선적재부기
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없는 경우	일자 표시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 표시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없는 경우	필요 없음
	표시된 경우	일자, 선박명, 선적항 표시

- ※ pre-carriage : by truck or rail 등
- ※ 수탁지에 선적항과 동일 또는 다른 장소 표시 여부와 상관없다.

[부기내용에 따른 구분]

- 수취식(또는 선적날짜 없음)
 - 선적일자가 표시된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 필요
- 선박명에 Intended가 있는 경우
 - 선적일자, ② 선박명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 선적항 없음 또는 Intended가 있는 경우
 - 선적일자, ② 선박명, ③ 선적항이 표시된 본선적재부기 필요

선하증권(B/L)	해상화물운송장(SWB)
유가증권	단순 운송화물 수취증
수하인을 지시식(to order of EPASS COMPANY)과 기명식(to EPASS COMPANY)으로 기재 가능	수하인을 기명식(to EPASS COMPANY)으 로만 기재
지시식일 경우 배서나교부에 의해서 권리양도 가능	배서나 교부에 의해 양도할수 없음

선하증권과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SWB은 선하증권을 대체하지 못함

■ Article 28.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제28조 보험서류 및 담보범위

[보험담보산정]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담보비용/금액
- (신용장에서 보험담보 요구 없을 경우)최소한 물품의 CIF 또는 CIP의 110%
- (CIF 또는 CIP 가격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요구된 결제(honour) 또는 매입(negotiation) 금액
 - 송장(invoice) 에 표시된 물품의 총가액
(할인, 선지급이 있는 경우 송장치로 부보비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총가 치로 부보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ISBP745 규정)